

안전검사·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재해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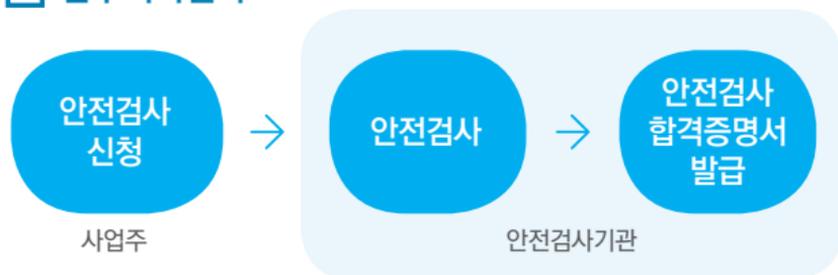
위험기계 및 설비
안전검사 제도 안내
수수료 개정 사항 반영
(‘21.8.1. 시행)

1 안전검사

✓ 안전검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 업무처리절차



✓ 업무처리기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안전검사의 주기

구분	주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안전검사 실시- 최초안전검사 실시 이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것은 최초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
이동식크레인 이삿짐운반용리프트 고소작업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관리법」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 최초안전검사 실시- 최초안전검사 실시 이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안전검사 실시- 최초안전검사 실시 이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실시

☑ 안전검사 대상 및 적용범위

대상	적용범위
프레스/전단기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은 적용 다만, 「건설기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리프트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는 적용) 다만,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산업용 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압력용기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 (2kgf/cm ²)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는 제외 ※ 사용압력이 2kgf/cm ² 미만인 경우 등 제외
곤돌라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국소배기장치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정하여 적용 디아니신딘과 그 염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리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염화비닐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크롬광 크롬산 아연 황화니켈 휘발성 폴타르피치 2-브로모프란 6가크롬 화합물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노말hexan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디메틸포름아מיד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곡물분진 망간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무수프탈산 브롬화메틸 수은 스티렌 시클로헥산 아닐린 아세트니트릴 아연(산화아연)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알루미늄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용접흄 유리규산 코발트 크롬 탈크(활석) 톨루엔 황산알루미늄 황화수소 다만,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원심기	액체·고체 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 물질들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는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심기는 제외 가. 회전체의 회전운동에너지가 750J 이하인 것 나. 최고 원주속도가 300m/s를 초과하는 원심기 다. 원자력에너지 제품 공정에만 사용되는 원심기 라. 자동조작설비로 연속공정과정에 사용되는 원심기 마. 화학설비에 해당되는 원심기
롤러기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 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는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사출성형기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는 적용(형 체결력 294kN 미만 제외)

※ 각 항목의 세부내용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2호[별표 1]) 참조

1

안전검사

☑ 안전검사 대상 및 적용범위

대상	적용범위
고소 작업대	<p>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테일 리프트(tail lift) 나.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다.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라.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마.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제품에 한함)
컨베이어	<p>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구간은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구동부 전동기 정격출력의 합이 1.2kW 이하인 것 나.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의 총 이송거리 합이 10미터 이하인 것 다. 무빙워크 등 사람을 운송하는 것 라. 항공기 지상지원 장비 마. 식당의 식판운송용 등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 바. 항만법, 광산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 사.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가 아닌 구간 아. 밀폐 구조의 것으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 자. 산업용 로봇 셀 내에 설치된 것으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 차. 최대 이송속도가 150mm/s 이하인 것 또는 구간 카. 도장공정 등 생산 품질 등을 위하여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것 또는 구간 타. 동력에 의하여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컨베이어(mobile equipment) 시스템 또는 구간 파. 개별 자력추진 오버헤드 컨베이어(self propelled overhead conveyor) 시스템 또는 구간 <p>※ 검사의 단위구간은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제어구간단위(제어반 설치 단위)로 구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정구간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p>
산업용 로봇	<p>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에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구중심점(TCP)의 최대 속도가 250mm/s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나. 각 구동부 모터의 정격출력이 80W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다. 최대 동작영역이 로봇 중심축으로부터 0.5m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라. 설비 내부에 설치되어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셀 마. 재료 등의 투입구와 배출구를 제외한 상·하·측면이 모두 격벽으로 둘러싸인 셀 바. 도장공정 등 생산 품질 등을 위하여 정상운전 중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설치된 셀 사. 로봇 주위 전 둘레에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이 설치된 것으로 방책의 출입문을 열면 로봇이 정지되는 셀 아. 연속적으로 연결된 셀과 셀 사이에 인접한 셀로서, 셀 사이에는 방책,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고, 셀 사이를 제외한 측면에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이 설치된 것으로 출입문을 열면 로봇이 정지되는 셀

※ 각 항목의 세부내용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2호[별표 1]) 참조

☑ 안전검사 대상품별 검사 수수료

※ 접수일 기준 '21.8.1. 부터 적용

(단위 : 원)

안전검사대상		안전검사 수수료		
크레인	천장, 갠트리	10톤 미만	77,000	
		50톤 미만	83,000	
		100톤 미만	87,000	
		200톤 이하	93,000	
		500톤 이하	117,000	
		500톤 초과	117,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 이내마다 117,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호이스트	5톤 미만	68,000	
		5톤 이상	72,000	
	타워	20톤 이하	168,000	
		20톤 초과	168,000원에 20톤을 초과한 10톤 이내마다 3,000원을 가산한 금액.	
		200톤	268,000	
		200톤 초과	268,000원에 200톤을 초과한 10톤 이내마다 3,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브, 기타	10톤 미만	100,000	
		50톤 미만	114,000	
		100톤 이하	136,000	
		100톤 초과	136,000원에 100톤을 초과한 100톤 이내마다 13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동식	-	68,000		
엔로우더	30톤 미만	170,000		
	50톤 미만	219,000		
	50톤 이상	248,000		
리프트	-	62,000		
압력용기	2㎡ 미만	38,000		
	5㎡ 미만	44,000		
	30㎡ 미만	51,000		
	40㎡ 이하	55,000		
	100㎡ 이하	61,000		
	100㎡ 초과	61,000원에 100㎡를 초과한 100㎡ 이내마다 61,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프레스 및 전단기	50톤 미만	40,000		
	200톤 미만	51,000		
	300톤 이하	60,000		
	500톤 이하	72,000		
	500톤 초과	72,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 이내마다 7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롤러기	-	57,000		
사출 성형기	2,942kN 미만	51,000		
	5,884kN 이하	60,000		
	5,884kN 초과	60,000원에 5,884kN을 초과한 5,884kN 이내마다 60,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원심기	-	58,000		
곤돌라	-	62,000		
국소 배기장치	150㎡/min 이하	62,000		
	500㎡/min 이하	87,000		
	500㎡/min 초과	87,000원에 500㎡/min을 초과한 500㎡/min 이내마다 87,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8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고소작업대	-	62,000		
컨베이어	20m 이하	67,000		
	20m 초과	67,000원에 20m초과한 10m 이내마다 7,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용 로봇	1대	76,000		
	1대 초과	76,000원에 1대 초과한 1대마다 1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에 대해 검사프로그램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자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

※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시 안전검사 면제

인정절차 및 방법

▶ 인정절차



- ①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신청서와 관련서류 2부를 첨부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 ② 안전보건공단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제출받은 15일 이내에 인정여부를 결정
- ③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신청한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부적합 통지서를 교부 받은 경우 사업주는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 자율검사 프로그램인정에 따른 검사방법

사업주 스스로 검사 실시 또는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 실시

■ **업무처리기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에 따른 검사주기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

다만, 크레인 중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 6개월 주기

■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대상품** 안전검사 대상품과 동일함

■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유효기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인정

■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수수료

125,000원 + 출장비 (10,000원 / 사업장) ※ 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신청시 제출서류

- ①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신청서 1부
- ②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보유현황
-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른 검사원 보유현황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관리방법(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 증명서류로 갈음)
- ④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주기 및 검사기준
- ⑤ 향후 2년간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수행 계획
- ⑥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 시)
- ⑦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 관련법령 및 고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부터 제100조까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부터 제135조까지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2호)
-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3호)
-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7호)

☑ 과태료

위반내용	과태료	관련근거
안전검사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검사기관

안전보건공단
1544-3089

대한산업안전협회
02-860-707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566-1277

한국안전기술협회
031-319-4321



4

안전검사기관 연락처 및 관할지역

☑ 안전보건공단 산하기관 연락처 및 관할지역

대표전화 1544-308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 우리빌딩 7층

T. 02)6711-2966 F. 02)6711-2969

담당업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관할지역 서울특별시, 강원도(철원군 제외), 경기도 가평군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부곡동)

T. 051)520-0570 F. 051)520-0579

담당업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관할지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20,21층

T. 053)609-0566 F. 053)421-8627

담당업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관할지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구산동)

T. 032)510-0669 F. 032)579-8192, 032)578-9202

담당업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관할지역 인천광역시, 경기도(부천, 김포, 의정부, 동두천, 구리, 남양주, 고양, 파주, 양주, 포천, 연천), 강원도 철원군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광주무역회관빌딩 9층

T. 062)949-8723 F. 062)949-8768

담당업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관할지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제주지역본부 실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문지동 104-7) 3층

T. 042)620-5645 F. 042)632-3619

담당업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관할지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256번길 91, 601호 에이스 광고타워 2차

T. 031)8014-2886 F. 031)8014-2889

담당업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관할지역 경기도(수원, 화성, 용인, 평택, 오산, 안성, 안양, 과천, 의왕, 군포, 광명, 안산, 시흥, 성남, 이천, 여주, 광주, 하남, 양평)

☑ 대한산업안전협회 산하기관 연락처 및 관할지역

대표전화 02-860-7072

지회명	전화/팩스번호	관할지역
서울지역본부	T. 02-869-7873~5 F. 02-856-0556	서울특별시 전역
부산지역본부	T. 051-804-5454 F. 0507-351-7021	부산광역시 전역
대구지역본부	T. 053-710-3100 F. 0507-351-7028	대구광역시 전역, 경상북도(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칠곡군)
충부지역본부	T. 032-363-3300 F. 0507-351-7033	인천광역시 전역
대전지역본부	T. 042-628-2160~2 F. 0507-351-7044	대전광역시 전역, 충청남도(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세종특별자치시 전역
광주지역본부	T. 062-943-0156~8 F. 0507-351-7039	광주광역시 전역,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성남지회	T. 031-777-9170 F. 0507-351-7014	경기도(광주시, 성남시,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하남시)
경기북부지회	T. 031-876-0281 F. 031-878-0288	경기도(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강원도(철원군)
경기남부지회	T. 031-665-2416 F. 0507-351-7038	경기도(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경기서부지회	T. 031-382-9988 F. 0507-351-7036	경기도(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안양시, 의왕시)
안산지회	T. 031-402-3998 F. 031-402-4096	경기도(시흥시, 안산시)
강원지회	T. 033-734-6201~2 F. 0507-351-7018	강원도 전역(철원군 제외), 경기도(가평군)
울산지회	T. 052-267-1500 F. 0507-276-4595	울산광역시 전역
창원지회	T. 055-281-3936~7 F. 055-284-1534	경상남도(의령군, 창녕군, 창원시, 함안군)
경남동부지회	T. 055-387-1343 F. 055-387-1344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지회	T. 055-752-4030 F. 055-758-4030	경상남도(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진주시, 통영시, 하동군, 함양군, 함천군)
경북북부지회	T. 054-451-1221 F. 054-455-4513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안동시, 영양군, 영주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지회	T. 054-277-0163~5 F. 054-281-8650	경상북도(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포항시, 포항시 남구, 포항시 북구)
전북지회	T. 063-212-4022~5 F. 063-212-4026	전라북도 전역
전남지회	T. 061-722-2801 F. 061-722-2803	전라남도(강진군, 고흥군, 광양시,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암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제주지회	T. 064-753-8237~8 F. 0507-351-7043	제주도 전역
충북지회	T. 043-236-0395~8 F. 043-236-0399	충청북도(괴산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청원군, 청주시)
충북북부지회	T. 043-855-5171 F. 043-855-5174	충청북도(단양군, 음성군, 제천시, 충주시)
충남북부지회	T. 041-522-4011~3 F. 0507-351-7047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충남서부지회	T. 041-669-1480 F. 0507-351-7048	충청남도(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4

안전검사기관 연락처 및 관할지역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산하기관 연락처 및 관할지역

대표전화 1566-1277

지사명	전화/팩스번호	관할지역
서울지역본부	T. 02-801-0318 F. 02-801-0369	서울(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 종로구,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용산구, 서초구, 동작구) 경기도(하남시,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서울북부지사	T. 02-948-3337 F. 02-948-2936	서울특별시(종로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경기도(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포천시) 강원도(춘천시, 철원군,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경기강원 지역본부	T. 031-289-3400 F. 031-289-3406	경기도(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과천시, 용인시, 안성시, 평택시,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이천시, 여주시) 강원도(영월군, 원주시, 횡성군, 정선군, 태백시, 평창군,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경인지역본부	T. 032-425-0685 F. 032-427-0687	인천광역시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강화군, 김포시)
충청지역본부	T. 042-864-3400 F. 042-633-0453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전지역 충청남도(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천안지사	T. 041-523-0454 F. 041-551-0455	충청남도(천안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부산경남 지역본부	T. 051-811-6500 F. 051-811-6505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양산시)
대구경북 지역본부	T. 053-560-1234 F. 053-289-3065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지역
경남동부지사	T. 055-237-8860 F. 055-237-2131	경상남도(양산시 제외)
울산지사	T. 052-275-8775 F. 052-275-5710	울산광역시
호남지역본부	T. 062-367-8305 F. 062-367-7509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 한국안전기술협회 산하기관 연락처 및 관할지역

대표전화 031-319-4321

지회명	전화/팩스번호	관할지역
경인지역본부	T. 032-429-8504 F. 032-429-8506	인천, 부천, 김포
서울지회	T. 02-894-8504 F. 02-894-8506	서울특별시 전역, 경기도(고양, 파주, 양주, 남양주, 동두천, 의정부, 구리, 포천, 연천, 가평), 강원도(춘천, 화천, 양구, 홍천, 인제, 철원)
경기남부지회	T. 031-268-8513 F. 031-268-8515	경기도(수원, 화성, 용인)
경기서부지회	T. 031-431-3139 F. 031-431-0223	경기도(안산, 시흥,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광명)
평택지회	T. 031-654-8504 F. 031-654-8507	경기도(평택, 오산, 안성)
경기동부지회	T. 031-751-3122 F. 031-752-4122	경기도(성남, 이천, 여주, 광주, 하남, 양평) 강원도(원주, 횡성, 평창, 강릉, 고성, 동해, 삼척, 속초, 양양, 영월, 태백, 정선)
대전지역본부	T. 042-538-3060 F. 042-523-9001	대전광역시 전역, 세종특별자치시 전역, 충청도(논산, 공주, 계룡, 금산, 보령, 서산, 홍성, 서천, 부여, 청양, 태안)
충남지회	T. 041-570-6446 F. 041-570-6447	충청도(천안, 아산, 예산, 당진)
충북지회	T. 043-216-8504 F. 043-216-8505	충청도(청주, 진천, 보은, 증평, 영동, 괴산, 옥천, 충주, 제천)
광주지회	T. 062-971-8666 F. 062-971-7077	광주광역시 전역, 전라도(나주, 담양, 화순, 곡성, 장성, 함평, 영광, 구례, 여수, 순천, 보성, 고흥, 광양)
전남지회	T. 061-464-6640 F. 061-971-7077	전라도(목포, 신안, 진도, 무안,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장흥)
전북지회	T. 063-244-3122 F. 063-244-4122	전라북도 전역
부산지역본부	T. 051-362-8100 F. 051-365-3930	부산광역시 전역
울산지회	T. 052-221-4090 F. 052-221-4092	울산광역시 전역
경남지회	T. 055-237-4824 F. 055-237-4827	경상남도(창원, 마산, 진해, 함안, 창녕, 의령, 진주, 사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남해, 합천, 통영, 거제, 고성)
경남동부지회	T. 055-364-8181 F. 055-364-1661	경상남도(김해, 양산, 밀양)
대구지회	T. 053-588-9303 F. 053-588-9306	대구광역시 전역 경상북도(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군위, 칠곡(석적면 중리 국가산업단지 제외))
경북지회	T. 054-473-8503 F. 054-473-8505	경상북도(구미, 김천, 영주, 상주, 문경, 봉화, 안동, 예천, 의성, 영양, 청송, 칠곡(석적면 중리 국가산업단지))
포항지회	T. 054-281-8504 F. 054-281-8505	경상북도(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